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0. 27 선고 2019가단714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피고 2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

담당변호사 이승우, 조형래, 이황선

피고 2 내지 5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경원

변론 종결2020. 9. 22.

판결 선고2020. 10. 27.

## 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76,865,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9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D, E,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,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,865,1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 B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과 같고, 피고 C은 원고에게 76,865,1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# 나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### 2. 피고 C, D, E,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#### 가. 인정사실

- 1)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고, 피고 D, E, F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.
- 2) 피고 B는 2012. 6.경 G 등과 태국 등에서 가상의 국내외 선물,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·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주식매수를 위한 예탁금 등을 입금받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고, 2012. 7.경부터 G, H 등과 함께 'T', 'J', 'K', 'L', 'M' 등의 상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금융상품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, 실제 주식,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탁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예탁금 합계금과 수익금 합계금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. 위 기간 동안 피고 B는 총책임자로서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위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.
- 3) 원고는 위 'T' 등 사이트를 통해 피고 B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

지급할 것처럼 기망 당하여 2013. 5. 20.부터 2017. 9. 27.까지 예탁금으로 주식회사 J, 주식회사 N 명의 각 계좌로 총 441,035,000원을 송금하고, 위 각 계좌로부터 총 364,169,855원을 송금받았다.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# **나. 원고의 주장**

피고 C, D, E, F(이하 '피고 C 등'이라 한다)은 피고 B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도록 각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B에게 제공하였는바,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중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76,865,145원을 피고 C 등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. 피고 C 등은 위와 같이 자신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고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, 원고에게 대하여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76,865,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설령 피고 C 등이 자신들 명의 계좌에 범죄수익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, 피고 C 등은 원고의 위 손해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예비적으로,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 B가 위 계좌에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하였는바,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위 돈에 관하여 임차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,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임차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76,865,145원의 반환을 구한다.

#### **다. 피고 C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**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 등이 피고 B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을 안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자신들 명의 계좌에서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그 돈이 피고 B의 사기 범행으로 취득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. 또한 피고 B의 범죄수익금이 피고 C 등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더라도, 이를 통하여 피고 C 등이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 C 등이 그 돈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었다거나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

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, 오히려 위 송금은 전적으로 피고 B의 의사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# **라.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**

살피건대, 통상적으로 예금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, 피고 B가 피고 C 명의 계좌를 사실상 사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 C에게 예금반환채권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.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명의 계좌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피고 B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결국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임치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대위채권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 **3. 결론**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D, E,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판사이형원**

별지